

「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원활한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과 양성평등기금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이 필요함.

3. 주요내용

-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추가(안 제20조)
- 양성평등위원회 임기 1년에서 2년, 연임을 한 차례로 변경(안 제22조)
- 양성평등위원회 실비변상 미지급 대상 조문 정비(안 제28조)
- 양성평등기금 운용범위 확대(안 제33조)
- 조례에 인용된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37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」,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- 합 의 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에 따라 조례 내용을 현행화하고 해석에 혼동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명확하게 하며, 양성평등기금을 이용한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양성평등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현재 기금의 이자로 추진하고 있으나 매년 이자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자 수익만으로 양성평등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됨.
- 조례 개정으로 기금의 결산 잉여금을 사업비로 추가하게 되면 양성평등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며, 본 조례안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